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7. 8 선고 2020나142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양선화

피고,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임효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대진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6169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영어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에 별지 어선의 표시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18.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288,296,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2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영어조합법인,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면 10행의 ”피고 B영어조합법인“을 ”제1심 공동피고 B영어조합법인“으로, 3면 11행의 ”피고 B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법인’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B영어조합법인(이하 ‘B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으로, 제1심판결문 3면 13행 및 그 이하의 각 ”피고법인“을 각 ”B영어조합법인“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면 19행 및 그 이하의 각 ”피고 E“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면 19행의 ”별지2“를 ”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0면 20행, 11면 15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면 3, 4행의 ”을마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을 ”을마 제10, 11,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면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W와 B영어조합법인 사이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7082) 내용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위 판결의 내용을 제1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았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석명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20. 3.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마 제10호증의 1 및 제1심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원용하면서 위 판결에 의하여 U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취소 또는 해제로 인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B영어조합법인은 U를 처음부터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U는 B영어조합법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전에 위 사건의 판결문(을 제17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14면 4행의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거나,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4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을마 제10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8. 6. 16.경 H 이외에도 U, T의 지분 24/25에 관하여 B영어조합법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마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영어조합법인 측에 2017. 9. 5.부터 2018. 6. 1.까지 합계 371,2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는 B영어조합법인과 AB 등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다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영어조합법인이 F에 대한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8. 5. 25.로부터 불과 20여일 후이고, U의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직후에 체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B영어조합법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이재환, 판사 임 솔

별지

어선의 표시

어선번호: AA

어선종류: 동력선

어선명칭: H(변경 전: G)

선적항: 시흥시(변경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총톤수: 9.77톤

용적: 폐위장소의 합계 용적 67.446m³

상갑판아래의 용적 48.293m³

상갑판위의 용적 19.153m³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선박용디젤 기관 1,200.000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끝.

